

자연발생유원지 사용료 징수실태

사 회 환 경 국

자연발생유원지 사용료 징수실태

□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명 칭	소 재 지	형 태	면적(지목)	비고
두량저수지	사천읍두량리1226-3 (6필지)	저수지숲	11,000평) (임야, 전)	
능 화 숲	사남면 우천리 156 (9필지)	하천변숲	1,100평 (임야, 도로)	
가 천 용 소	사남면 가천리 (2필지)	하 천 변	3,000평 (하천)	
진 분 계 숲	사남면 계양리	하천변숲	4,000평 (임야)	
백 천 계 곡	백천동 55-59	하 천 변	5,960평 (하천)	

□ 자연발생유원지 사용료 징수현황

명 칭	소 재 지	징 수 내 역		비 고
		주 차 료	사 용 료	
진분계숲	사남 계양	0	2,000~3,000	텐트 야영시
가천용소	사남 가천	2,000	2,000	"
능 화 숲	사남 우천	2,000	2,000	"

□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근거

-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을 지정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일정 수수료(입장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사유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곤란하여 시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현 실 태

-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는 유원지 자체가 규모나 시설면에서 열악하여 여름 피서철에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 유원지부지 및 수목자체가 개인 및 마을공동소유로 수수료 징수 시 시에 납부 및 지급절차관계로 위탁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탁계약체결시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됨
- 시설소유자가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하여 주로 야영객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 주차료는 시설관리자가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신고하므로 승용차에 관하여 당일 2,000원, 야영시 4,000원을 징수하도록 '96. 6.27일 신고 수리하였음